

실습기관 인식조사 기반 표준현장실습의 도입논의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Standard Field Practice Based on the Awareness Survey of Field Training Institution

노 영 희 (Younghee Noh)*

목 차

- | | |
|---------------|--------------------|
| 1. 서론 | 5. 현장실습기관 인식조사 결과 |
| 2. 선행연구 | 6. 표준현장실습의 도입상의 논의 |
| 3. 연구질문 | 7. 결론 및 제언 |
| 4. 연구설계 및 방법론 |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표준현장실습학기제의 도입의 가능성과 무급운영이 가능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장실습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이들의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한 대응전략을 제안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실습기관의 직무관련 교육시간의 배정시간을 포함하여 운영시간 및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표준현장실습의 도입상황에 대해서 매우 낮은 인지도를 보여 주었고, 표준현장실습의 내용, 표준현장실습 운영서 및 협약 내용, 표준현장실습 내용 변경 사실, 표준현장실습 수행시 실습 지원비, 표준현장실습 근로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실습기관의 요건 충족도 등에서 매우 낮은 인식도를 보여 주었으며, 다만 표준현장실습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포함한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표준현장실습 도입시 고려 사항으로,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적용제의 대상으로 법개정, 표준현장실습학기 또는 자율현장실습학기제 채택 고민, 현장실습기관의 충분한 확보 및 공유, 그리고 현장실습매뉴얼의 개발과 공동활용 등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nd understand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a standard field training semester system and the possibility of operating an autonomous field training semester system that can be operated without payment and propose a response strategy based on their perception survey conducted with the field training institut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t is apparent that the practice institution shows a very low perception of operating hours and operating methods, including the allocation of job-related training hours. Second, the introduction status of standard field practice turned out to be very low, while the introduction status of standard field practice, operation and agreement, change of standard field practice, specific details of standard field practice contract, and satisfaction of standard field practice turned out to be very low. Based on which, this study considers the introduction of standard field practice based on the reference research including surveys, such as the amendments of the relevant laws, adoption of standard field practice semesters or autonomous field practice semesters, securing and sharing sufficient field practice manuals, among others.

키워드: 현장실습기관, 인식조사, 표준현장실습, 정책제안, 문헌정보학, 도서관
Field Training Institution, Awareness Survey, Standard Field Practice, Policy Proposal,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brary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 ISNI 0000 0000 4120 5652)
논문접수일자: 2022년 7월 17일 최초심사일자: 2022년 8월 1일 게재확정일자: 2022년 8월 17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3): 153-179, 2022. <http://dx.doi.org/10.4275/KSLIS.2022.56.3.153>

* Copyright © 2022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2021년에 학점은행제 및 평생학습기관, 더 나아가 사교육 학원에서 사서자격증자를 배출하려는 움직임에 문헌정보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교육부를 상대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도서관정책기획단에서는 전국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그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에서 의견수렴을 수행하고, 그 분석결과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국가자격증에 해당하는 사서자격증을 받게 될 피교육자에 대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교육과정의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연구까지 수행되었으며, 문헌정보학계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되고 논의되는 과정을 거쳤다. 여기에서 사서자격증자의 질 관리를 위해 제안된 방안 중의 하나가 현장실습과목을 필수 교과목화 하는 것이고 이를 도서관법에 규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헌정보학과와 도서관 현장 등에 그 내용이 적용되지는 못하고 있고, 현재도 논의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에서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을 전부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교육부 공고 제2021-103호), 주요 내용은 표준현장실습학기제의 도입이고, 도서관 현장에서 이러한 표준현장실습학기제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 일단 이러한 표준현장실습학기제의 도입배경을 보면, 산학연계를 통한 현장성 있는 교육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산업현장의 경험이 중요시 되어 현장실습이 강조되어 왔지만, 저비용 노동력 제공수단으로 변질되고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즉 질적 내실화 및 학생 권익과 안정성을 강화한 학생 중심의 현장실습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현장실습학기제는 크게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제2조제2호)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첫째, 현장실습학기제의 체계화와 표준화된 운영절차의 마련, 둘째, 학생권익 강화 및 안전망 구축, 셋째,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넷째, 국가 재난 등에 대비한 탄력적 현장실습 운영이다. 이를 위해 대학이 전공적합성 및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학생을 추천하고, 실습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부합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것(제11조제2항)을 지키는 것이다.

문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이며, 이러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아직 직무역량이 준비되지 않은 대학생들을 받아 줄 기업이나 기관이 얼마나 있을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즉, 실습기관은 학생의 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 중간점검 및 결과점검, 지도 등의 교육시간(전체 실습시간의 10% 이상 25% 이내)을 배정해야 하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에 한해 근로자로 의제하여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며,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문제 예방 등 학생 안정망 강화를 위해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실습 직무 범위 내 노동관계법령 준수, 제23조). 또한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해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실습지원비로 지급(제22조)해야 한다.

문헌정보학계에서 현장실습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규정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의 이러한 표준현장실습학기제의 도입이 이루어진 것이다. 도서관 현장 및 유사 직종의 현장을 보

있을 때, 과연 이러한 조건을 지켜서 실습생을 받아 줄 기관이 얼마나 있을지가 문제이고, 게다가 전국의 문헌정보학과 학생이 매년 2,000여 명씩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모든 문헌정보학과가 현장실습 교과목을 운영하게 된다면, 1년에 평균 이 만큼의 수가 현장실습을 가게 될 경우에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부 규정을 지키는 수준으로 수용할 기관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염려는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현장실습학기제의 도입의 가능성과 무급운영이 가능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현장실습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이들의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한 대응전략을 제안해 보고자 하였다. 물론 본 논문을 통해 완전한 대책이 나올 수는 없을 것이며, 향후 각 대학 및 도서관계의 상황을 고려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으로써 현명한 정책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선행연구

현장실습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우리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이 수행되고 있고, 현장실습 운영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한 개선방향 제안이나 실습환경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현장실습의 질 관리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문헌정보학용어사전(문헌정보학용어사전 편찬위원회, 2010)에는 도서관실습(internship)과 실습과목(practicum)이라는 용어가 있으

며, 도서관실습(internship)은 “도서관이나 정보서비스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과정의 이수에 요구되는 전문 실습과정으로 일정 기간 실습 후 평가하는 교육과정, 실습과목(practicum)은 이론의 연구 및 학습을 기반으로 이에 대한 실제 업무 및 서비스를 경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진 교과과정의 한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실습과 관련한 많은 유사한 용어들이 의미와 용도의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수영과 김유승(2012)은 전국 34개 4년제 문헌정보학과 및 학부에 개설된 도서관실습 교과목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서관실습’, ‘실무실습’, ‘문헌정보학 인턴십’, ‘도서관정보센터실습’, ‘사서 실무실습’, ‘실습교육’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구본영(1983)은 국내 도서관실습 운영 실태를 조사하면서 미국의 도서관실습 교육의 다양한 종류와 특성을 소개하고 이 다양한 종류 중에서 국내에서는 어떤 형태로 도입되었는지 소개하는 과정에서 관련 용어들의 의미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구분하였다.

한편,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도서관실습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도서관실습 교육환경을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구본영, 1983; 이수영, 김유승, 2012), 도서관실습교육의 효과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을 분석한 연구(유사라, 2012; 차성중, 2015; 2016; 박지영, 박성재, 2017)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과 연결하여 도서관실습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연구(곽동철, 2011; 노영희, 2006; 노동조, 2009; 노영희, 안인자, 최상기, 2012;

차성중, 2016)들이 주를 이루었다. 실습 경험과 의견을 반영한 실습교육의 방향과 방법들을 제안한 연구(차성중, 2017)도 있다.

최근에 현장실습의 필수교과목화의 필요성이 학계에서 논의가 되면서 노영희(2022)는 문헌정보학과의 현장실습 운영현황 및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의 실습기관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년제 및 2년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현장실습현황에 대해서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현장실습은 학생들의 취업경쟁력, 취업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현장실습환경은 문헌정보학과 학생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현장실습을 가장 많이 가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이 다양한 기관을 체험하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기관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현장실습의 평가 내용이나 평가자는 학교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대학이 다양한 척도로 현장실습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장실습교육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 매뉴얼을 개발하여 각 대학에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를 보았을 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표준현장실습과 관련된 연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준현장실습이 문헌정보학과에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이슈는 무엇이고 그 대안은 무엇인지를 포함하여 사서자격증을 발급해 주고 있는 문제부는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여러 연구자에 의해 다양한 각도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연구질문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의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의 도입으로 학생, 도서관 및 현장, 문헌정보학계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그 방안 중의 하나로 도서관 및 유사업종의 대표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식과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준현장실습관련 고시는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 중 현장실습 수업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설계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연구문제는 이러한 표준현장실습이 문헌정보학과에 적용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나 문제 등이 될 것이다.

첫째, 1개월간의 현장실습생에게 최저임금의 75%의 급여를 주고 산재보험에 의무가입해서 학생을 받아 줄 기업이나 기관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둘째, 현장실습 과목이 필수교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 것인가?

셋째, 실습기관은 학생의 실습에 필요한 사전

교육, 중간 점검 및 결과 점검, 지도 등의 교육시간(전체 실습시간의 10% 이상 25% 이내)을 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넷째, 실습기관은 국가재난 등에 대비해서 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 시행과 일정한 조건하에서 재택현장실습을 허용할 것인가?

다섯째,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를 택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경우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제한적으로 무급운영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 엄격한 요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위에서 제기된 질문 외에 수없이 많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는 연구를 통해서 하나 하나 밝혀 내 보고자 한다.

4. 연구설계 및 방법론

4.1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다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연구절차를 통해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며, 선행연구 및 문헌분석단계, 설문조사 설계 및 수행단계를 거치고, 이를 기반으로 도출된 시사점을 기반으로 한 논의 및 제안을 하였다. 논의의 내용은 위에서 언급했던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하며, 제안의 경우 표준현장실습과 관계된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떤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하였다.

<표 1> 연구절차 및 연구내용

구분	연구내용	
1단계 문헌연구	√ 문헌정보학계를 포함하여 현장실습과 관련된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 및 분석 √ 표준현장실습 관련 교육부 규정의 검토와 분석	
2단계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	설문설계	√ 현장실습과 관련된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를 통한 문항도출 √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교육부 규정으로부터 문항도출
	설문수행	√ 도서관, 출판사, 서점, 자동화 업체, DB 구축 업체 등 문헌정보학과 학생이 직무와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갈 수 있는 곳을 선별 √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확보 √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서 설문응답 요청(4회)
	설문조사결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설문문항별 기술통계분석결과 도출 √ 연구질문과 연계하여 시사점 도출
3단계 논의 및 결론	√ 표준현장실습과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 관점에서 정리 √ 대학과 학과와 학생은 어떤 준비와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 √ 문체부와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가져올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 √ 어떤 측면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지에 대한 제안	

4.2 설문설계 및 방법

설문을 설계함에 있어 선행연구를 조사하였으며, 특히 실습기관과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는 연구를 참조하였다. 차성종(2016)은 문헌정보학 전공 현장실습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현장실습교육 구성요인으로서 적합한 NCS 능력단위를 도출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연계된 문헌정보학 현장실습 교육과정 모델을 설계하고 NCS 기반의 문헌정보학 실습교육 내용의 기준 및 지침을 구체화하여 제안하는 연구를 수행했고, NCS를 기반으로 문헌정보학 실습교육 내용의 기준 및 지침을 구체화하여 현장실습 실습생에게 요구되는 현장실습 교육 지침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현장실습 교육지침서의 구성항목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실습기관의 자격 기준, 실습지도자의 자격기준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또한 교육부 공고 제2021-103호의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중 현장실습 기관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설문을 개발하였다.

설문은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2개월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문대상은 K대학에서 지난 20년 동안 실습대상기관으로 선택되어 온 기관을 대상으로 했으며, 총 63개 기관 중 31개 기관이 응답하여 49.21%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4번의 전화요청과 이메일 요청을 통해 설문외뢰를 하였으나 비공개임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설문이라서 응답이 어렵다고 답변을 보내 온 공공기관들도 다수 있었다.

다음에 제시되는 설문지는 크게 인구통계학적 특징, 일반현황, 인식조사, 수요조사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5. 현장실습기관 인식조사 결과

5.1 인구통계학적 특징 및 일반현황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K대학에서 한번이라도 현장실습을 간 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으며, 그 결과 응답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인구통계학적 특징기반 교차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응답의 편차가 커서 사실상의 의미가 없어서 제외하였다(<표 3> 참조).

다음으로, 설문응답기관의 최근 5년 이내 현장실습 학생을 수용한 횟수를 조사했을 때, 1회가 25.81%이고 5회 이상이 22.58, 2회 19.36%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현장실습 수용인원은 1-2명이 48.39%로 가장 높고, 3-4명 29.03%, 6명 이상 9.68% 순으로 나타났다. 3회 이상 실습학생을 수용한 기관이 50% 수준으로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학생 수용의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끊임없이 새로운 현장실습기관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현장실습학생을 받았던 기관은 다음에도 받을 의지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표 4> 참조).

5.2 교육 및 운영에 대한 인식

교육 및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현장실습학기제의 목적과 범위에 적합한 업무 부여 여부, 실습기관의 직무 관련 교육시간(10% 이상~25% 이하) 배정 사실에 관한 인지 여부 운영시간 및

〈표 2〉 설문 구조도

대분류		중분류/소분류		
인구통계학적 특징		성별 / 연령/ 직위 / 경력 / 기관유형		
일반현황		최근 5년 이내 현장실습 학생 수용 횟수		
		최근 5년 이내 현장실습 학생 연 평균 수용 인원		
인식조사	교육 배정 및 운영	현장학습학기제의 목적과 범위에 적합한 업무 부여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 10% 이상 ~ 25% 이하 배정		
		운영기간 및 시간	1일 8시간 기준 운영	
			1주간 40시간 기준 운영	
			1주간 5~12시간을 한도로 연장 필요 시 근로계약 체결	
	1주간 4일 또는 6일 운영 시, 시간 기준 준수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야간 운영 금지			
	표준현장실습에 대한 인식		표준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해 들어본 경험	
			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	
	운영 계획 및 협약	계획서 및 협약	서식에 맞게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을 수립	
			계획서는 업무협의 시점에 실습기관에서 학교로 제출 운영계획서에 근거하여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협약 변경 및 해지가 필요한 경우, 사항을 반영하여 가능	
내용 변경	내용 변경	실습기관 사정으로 내용, 기간 및 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 통보하고 학교 및 학생 동의하에 변경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를 학교 측에 알리고 학교와의 협의 하에 현장실습학기제를 중단 또는 취소		
		실습기관 사정으로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의 현장실습 이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학생 관리 및 평가·보호	학생 보호	사고·재해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등 산재보험에 한해 근로자로 의제하여 보험 의무 가입 최저임금의 75/100이상의 실습지원비 지급 국가재난 발생 시 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 시행		
	출석관리	현장실습이 실시된 일자가 관리될 수 있도록 출석 관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서식에 따라 출석 관리		
실습지원 및 근로계약	실습 지원비	실습지원비 지급 학생에게 현물로 제공되는 경우는 불포함하며,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지 않아야 함 기준에 따라 지급		
		근로계약	연장·야간 실습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금액과 시간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 근로 문제 예방 등 학생보호 조치 목적 등으로 표준 현장실습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서식 제출 시 학교와 협의 후 진행해야 함 현장실습학기제 기준과 범위에서만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지켜야 함	
수요조사	실습기관 요건		실습기관의 요건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생각	
		실습기관의 요건을 갖추고 수용 가능한 인원		
		최저시급 대비 지급 가능한 실습비 정도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자율현장실습학기제 시 실습기관의 수용 가능 여부			
	자율현장실습학기제 시 실습생 수용 여부			
	자율현장실습학기제 시 실습생 수용 인원			
그 외 기타 의견 작성				

〈표 3〉 인구통계학적 특징

구분	설문 내용	N	%
성별	남성	6	19.36
	여성	25	80.65
연령	30세 미만	3	9.68
	30~39세	17	54.84
	40~49세	7	22.58
	50~59세	4	12.90
직위	대표자	2	6.45
	상급자	3	9.68
	담당자	26	83.87
경력	1년 미만	1	3.23
	1년 이상~5년 미만	8	25.81
	5년 이상~10년 미만	8	25.81
	10년 이상~15년 미만	6	19.36
	15년 이상~20년 미만	4	12.90
	20년 이상	4	12.90
기관 유형	공공도서관	25	80.65
	대학도서관	4	12.90
	연구소	1	3.23
	기타	1	3.23

〈표 4〉 일반현황

구분	설문 내용	N	%
최근 5년 이내 현장실습 학생 수용 횟수	없다	3	9.68
	1회	8	25.81
	2회	6	19.36
	3회	5	16.13
	4회	2	6.45
	5회 이상	7	22.58
최근 5년 이내 현장실습 학생 연 평균 수용 인원	없다	3	9.68
	1-2명	15	48.39
	3-4명	9	29.03
	5-6명	1	3.23
	6명 이상	3	9.68

기관에 대한 인식 현황 등으로 구분해서 질의하였다. 먼저, 현장실습학기제의 목적과 범위에 적합한 업무를 부여했는지에 대해서 실습기관은 그렇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77% 정도였으며, 평균 4.10으로 높은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다음으로 실습기관의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10% 이상 25%이하로 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였으며, 잘 모르거나 전혀 몰랐다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표 5〉 현장실습학기제의 목적과 범위에 적합한 업무 부여 여부

구분	설문 내용	N	%	M	std
현장실습학기제의 목적과 범위에 적합한 업무 부여 여부	전혀 그렇지 않다	1	3.23	4.10	1.012
	그렇지 않다	1	3.23		
	보통이다	5	16.13		
	그렇다	11	35.48		
	매우 그렇다	13	41.94		

높고, 알고 있다는 비율은 32% 수준이며, 평균은 2.84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실습기관이 표준현장실습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현장실습을 보낼 때 이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파악할 수 있다(〈표 6〉 참조).

또한, 운영시간 및 기관에 대한 인식 현황에 대해서 조사했을 때 1주간 5~12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형태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비율만 3점 이하로 낮게 나타났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평균 3.5 이상의 인지도를 보여주었다(〈표 7〉 참조).

〈표 7〉의 응답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표준현장실습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현장실습방법, 즉, 8시간의 근무시간을 준수하거 40시간 이내에서 근무요청을 하는 것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 정도 수준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현장실습생을 지

도하고 있으나, 의무적으로 교육시간을 배정한다거나 그 외의 규정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3 표준현장실습에 대한 인식

표준현장실습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표준 현장실습 주요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지, 표준 현장실습 도입 배경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먼저, 표준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해 실습기관이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 하였으며, 들어 본적인 없거나 잘 모른다는 비율이 36%이고 평균으로 보았을 때에도 3점 이하의 인지도를 보여 주었다. 이는 학생을 받아야 할 현장실습기관이 표준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올바른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표 8〉 참조).

〈표 6〉 실습기관의 직무 관련 교육시간(10% 이상~25%이하) 배정 사실에 관한 인지 여부

구분	설문 내용	N	%	M	std
10% 이상~25% 이하 직무 관련 교육시간 배정 사실에 관한 인지 여부	전혀 모른다	3	9.68	2.74	1.094
	잘 모른다	13	41.94		
	보통이다	5	16.13		
	알고 있다	9	29.03		
	잘 알고 있다	1	3.23		

〈표 7〉 운영시간 및 기관에 대한 인식 현황

구분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M	std
	N	%	N	%	N	%	N	%	N	%		
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함을 알고 있다.	1	3.2	1	3.2	3	9.7	14	45.2	12	38.7	4.13	0.957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1주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함을 알고 있다.	0	0.0	4	12.9	2	6.5	15	48.4	10	32.3	4.00	0.966
1주간 5~12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형태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함을 알고 있다.	3	9.7	11	35.5	8	25.8	5	16.1	4	12.9	2.87	1.204
1주간 4일 또는 6일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시간 기준을 지켜 운영하여야 함을 알고 있다.	0	0.0	3	9.7	7	22.6	14	45.2	7	22.6	3.81	0.91
현장실습은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야간 중에 운영하지 않아야 함을 알고 있다.	1	3.2	4	12.9	4	12.9	12	38.7	10	32.3	3.84	1.128

〈표 8〉 표준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실습기관의 인지도

구분	설문 내용	N	%	M	std
표준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실습기관의 인지도	전혀 들어본 적 없다	3	9.68	2.87	1.088
	잘 모른다	9	29.03		
	보통이다	10	32.26		
	알고 있다	7	22.58		
	잘 알고 있다	2	6.45		

표준현장실습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였으며, 실습기관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에 한해 근로자로 의제하여,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평균 3.0 이하의 인지도를 보여 주고 있고, 산재보험이 그나마 3.10 정도로 나타난 것은 K대학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대학이 최근에는 산재보험을 들고 학생을 보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표 9〉 참조).

표준현장실습 도입 배경에 대해 동의하는지에 대해서 현장실습기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위의 질문과 연계해서 볼 때, 표준현장실습학기제의 도입 배경이나 취지는 이해하는데, 표준현장실습이나 표준현장실습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것이며, 이 또한 표준현장실습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표 10〉 참조).

표준현장실습학기제의 주요 내용이나 표준

〈표 9〉 표준현장실습 주요 내용에 관한 인지도

구분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M	std
	N	%	N	%	N	%	N	%	N	%		
실습 중 각종 사고·재해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부정적 실습상황에 대한 시정요청, 실습중단 및 복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2	6.5	12	38.7	6	19.4	7	22.6	4	12.9	2.97	1.197
실습기관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에 한해 근로자로 의제하여,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4	12.9	8	25.8	5	16.1	9	29.0	5	16.1	3.10	1.326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해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의 75/100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5	16.1	11	35.5	7	22.6	5	16.1	3	9.7	2.68	1.222
국가재난 발생 시 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복고, 대체과목 시행 등) 시행과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재택현장실습(실습기간의 1/4이내)을 허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3	9.7	14	45.2	9	29.0	2	6.5	3	9.7	2.61	1.086

〈표 10〉 표준현장실습 도입 배경에 관한 동의 여부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M	std
	N	%	N	%	N	%	N	%	N	%		
참여학생의 권익보호 강화 및 실습 내실화의 필요	1	3.2	1	3.2	7	22.6	18	58.1	4	12.9	3.74	0.855
보험가입 의무화를 통한 참여 학생 안전망 강화 필요	1	3.2	1	3.2	6	19.4	17	54.8	6	19.4	3.84	0.898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문제 예방 등 학생 안전망 강화 필요	1	3.2	1	3.2	5	16.1	17	54.8	7	22.6	3.90	0.908

현장실습 도입 배경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도입배경은 어느 정도 이해하겠으나 표준현장실습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인식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를 포함하여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은 현장 실습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시급히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4 운영 계획 및 협약에 대한 인식

현장실습 학생을 받고 현장실습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 운영 계획이나 협약에 대한 동의도에 대해 알고자 하였으며, 먼저, 표준현장실습 운영서 및 협약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였다. 그 결과,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점 정도로 보통 수준이지

만 모른다는 비율이 전 항목에서 3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1〉 참조).

그리고 최근에 표준현장실습 내용이 상당히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자 실제로 변경된 내용을 제시하고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해선 평균 3.5 정도로 나타났고 여전히 잘 모른다는 비율은 20% 이상으로 조사되었다(〈표 12〉 참조).

〈표 11〉 표준현장실습 운영계획서 및 협약 내용에 관한 인지도

구분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M	std
	N	%	N	%	N	%	N	%	N	%		
표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맞게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함을 알고 있다.	1	3.23	9	29.0	8	25.8	10	32.3	3	9.7	3.16	1.068
운영계획서는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업무협의 시점에 실습기관에서 학교로 제출하여야 함을 알고 있다.	1	3.2	10	32.3	6	19.4	11	35.5	3	9.7	3.16	1.098
협약 및 확정된 운영계획서에 근거하여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여야 함을 알고 있다.	1	3.2	8	25.8	8	25.8	12	38.7	2	6.5	3.19	1.014
실습기관, 학교 및 학생의 사정에 따라 협약 변경 및 해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1	3.2	11	35.5	8	25.8	9	29.0	2	6.5	3.00	1.033

〈표 12〉 표준현장실습 내용 변경 사실에 관한 인지도

구분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M	std
	N	%	N	%	N	%	N	%	N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현장실습학기제 내용, 기간 및 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교 측에 통보하고 학교 및 학생의 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함을 알고 있다.	2	6.5	6	19.4	6	19.4	12	38.7	5	16.1	3.39	1.174
학생의 무단결석, 실습지도 거부 및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인해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를 학교 측에 알리고 학교와의 협의 하에 현장실습학기제를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1	3.2	5	16.1	7	22.6	13	41.9	5	16.1	3.52	1.061
실습기관 사정으로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의 현장실습 이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을 알고 있다.	1	3.2	7	22.6	8	25.8	10	32.3	5	16.1	3.36	1.112

5.5 학생 관리 및 평가·보호에 대한 인식

한편, 현장실습생의 출석관리를 해야 하고 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함으로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했으며, 3.5 이상의 인지도를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모른다는 비율이 15% 이상임을 알 수 있다(〈표 13〉 참조).

다음으로 표준현장실습 수행시 실습 지원비를 지급해야 함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균

2.68로 나타났고, 기타 학생에게 현물로 지급되는 것은 실습지원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습 지원비를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야간 실습비는 150%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5 정도의 낮은 인식수준을 나타냈다. 모든 항목에 대해서 거의 60%의 응답자가 모른다는 응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4〉 참조).

표준현장실습 근로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

〈표 13〉 표준현장실습 출석관리에 관한 내용에 대한 인지도

구분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M	std
	N	%	N	%	N	%	N	%	N	%		
공휴일, 휴일 및 실습기관의 사정 등에 의한 현장실습학기제 미실시 일정을 확인하여, 실제 학생이 출석하여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시된 일자가 관리될 수 있도록 출석을 관리해야 함을 알고 있다.	1	3.2	4	12.9	3	9.7	17	54.8	6	19.4	3.74	1.032
실습기관에서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서식에 따라 출석을 관리해야 함을 알고 있다.	1	3.2	4	12.9	6	19.4	15	48.4	5	16.1	3.61	1.022

〈표 14〉 표준현장실습 실습 지원비에 관한 내용에 대한 인지도

구분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M	std
	N	%	N	%	N	%	N	%	N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함을 알고 있다.	3	9.7	14	45.2	6	19.4	6	19.4	2	6.5	2.68	1.107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하지 않아야 함을 알고 있다.	4	12.9	14	45.2	7	22.6	4	12.9	2	6.5	2.55	1.091
실습지원비는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함을 알고 있다.	3	9.7	13	41.9	4	12.9	9	29.0	2	6.5	2.81	1.167
연장·야간 실습시간에 대한 실습지원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금액과 연장·야간 실습시간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함을 알고 있다.	4	12.9	15	48.4	6	19.4	4	12.9	2	6.5	2.52	1.092

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했으며, 근로계약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지켜야 함을 알고 있다라는 항목에서만 평균 3.32의 인지도를 보여주었고 나머지 두 항목은 평균 3점 이하의 인지도를 보여 주고 있다. 게다가 보통을 포함하여 모른다는 비율이 거의 70% 수준에 이르고 있어 그 심각성이 좀 높다고 할 수 있다(〈표 15〉 참조).

5.6 실습기관 요건에 관한 인식

본 설문에서는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현장실습기관이 실습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 파악

하고자 하였으며, 실습기관의 요건 충족도를 포함하여 몇 명까지 실습생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도 조사하였다. 먼저, 스스로 평가해 볼 때 실습기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평균 3.0으로 보통 수준임을 알 수 있고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기관은 30% 수준으로 아직도 여전히 상당히 미흡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표 16〉 참조).

현장실습생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질의 했으며, 현장실습생을 수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기관은 29%이고 1-2명이 50% 수준이며, 9명이나 1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2개 기관으로 나타났다(〈표 17〉 참조).

〈표 15〉 표준현장실습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에 대한 인지도

구분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M	std
	N	%	N	%	N	%	N	%	N	%		
협약 체결 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 문제 예방 등 학생보호 조치 목적 등으로 표준 현장실습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서식 제출 시 학교와 협의 후 진행해야 함을 알고 있다.	3	9.7	9	29.0	9	29.0	8	25.8	2	6.5	2.90	1.106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과 범위에서만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범위와 다른 업무를 부여하거나 다른 기준으로 체결하지 않아야 함을 알고 있다.	2	6.5	11	35.5	7	22.6	9	29.0	2	6.5	2.94	1.093
근로계약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지켜야 함을 알고 있다.	1	3.2	8	25.8	6	19.4	12	38.7	4	12.9	3.32	1.107

〈표 16〉 응답 기관의 실습기관 요건 충족도에 관한 인식

구분	설문 내용	N	%	M	std
응답 기관의 실습기관 요건 충족도에 관한 인식	전혀 불충분	0	0.00	3.03	0.836
	불충분	9	29.03		
	중간	13	41.94		
	충분	8	25.81		
	매우 충분	1	3.23		

〈표 17〉 응답 기관의 실습기관 요건 충족에 따른 실습생 수용 가능 인원

구분	설문 내용	N	%
응답 기관의 실습기관 요건 충족에 따른 실 습생 수용 가능 인원	없다	9	29.03
	1명	8	25.81
	2명	7	22.58
	3명	3	9.68
	4명	2	6.45
	5명	0	0.00
	6명	0	0.00
	7명	0	0.00
	8명	0	0.00
	9명	1	3.23
	10명 이상	1	3.23

최저시급 대비 실습비 감축 비율에 따른 실습생 수용 의사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실습비가 없는 현행이 51.61%로 나타났고, 최저시급의 20% 미만 수준에서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29%로 80% 이상의 기관이 실습비 지급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8〉 참조).

5.7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수요조사

한편,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각 학교에서 제3장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준

과 달리, '해당 학교장의 책임 하에 학교 자율적 기준으로 운영하는 현장실습학기제'이다. 실습기관은 무급제인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경우 실습생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 하였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이 51%로 매우 높고 평균도 2.87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무급제이지만 많은 교육을 제공해야 하고 시간의 제약이 많기 때문에 이 또한 현장의 반응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질문과 연계해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하에서는 실습생 수용도가 매우 낮아짐을 알 수 있다(〈표 19〉 참조).

〈표 18〉 최저시급 대비 실습비 감축 비율에 따른 실습생 수용 의사

구분	설문 내용	N	%
최저시급 대비 실습비 감축 비율에 따른 실습생 수용 의사	10% 미만	6	19.36
	10~20%	3	9.68
	20~30%	1	3.23
	30~40%	1	3.23
	41~50%	1	3.23
	51~60%	1	3.23
	61~70%	2	6.45
	현행(없음)	16	51.61

〈표 19〉 실습기관의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용 및 학생 수용 가능성

구분	설문 내용	N	%	M	std
실습기관의 자율 현장 실습학기제 수용 가능 성에 관한 인식	전혀 불가능	2	6.45	2.87	0.885
	불가능	7	22.58		
	중간	16	51.61		
	가능	5	16.13		
	매우 가능	1	3.23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하에서의 실습생 수용 의사	전혀 그렇지 않다	2	6.45	2.77	0.845
	그렇지 않다	8	25.81		
	보통이다	17	54.84		
	그렇다	3	9.68		
	매우 그렇다	1	3.23		

만약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한다면 학생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였으며, 없다가 20%, 1-2명이 60% 수준으로 나타났다. 4명에서 9명은 0개의 기관으로 나타났고, 10명 이상은 역시 대학도서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0〉 참조).

5.8 실습기관들의 기타의견

면담은 수행하지 못했지만, 응답자들이 기타 의견으로 기술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면 다음 〈표 21〉과 같으며, 이는 법개정자, 정책입안자, 문헌정보학계 교수들이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표준현장실습의 도입상의 논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표준현장실습학기제가 도입이 된 후 문헌정보학과와 도서관이 직면하게 될 상황을 설문조사 기반 인식 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육 배정 및 운영, 표준현장실습의 내용 및 조건, 운영 계획 및 협약, 학생 관리 및 평가·보호, 실습지원 및 근로계약, 실습기간 요건,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와 그 간의 각종 정책, 규정, 문헌정보학계의 논의를 기반으로 표준현장실습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나누고자 한다.

〈표 20〉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하에서의 실습생 수용 가능 인원

구분	설문 내용	N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하에서의 실습생 수 용 가능 인원	없다	6	19.36
	1명	12	38.71
	2명	7	22.58
	3명	4	12.90
	4명 / 5명 / 6명 / 7명 / 8명 / 9명	0	0.00
	10명 이상	2	6.45

〈표 21〉 기타 의견

기타 의견
실제 사서의 업무와 실습생에게 부여되는 업무의 차이가 큼니다. (현장에 배치되는 학생들은 거의 도서 배가 업무만 하다가 집 예가는 아르바이트생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식으로 실습을 한 학생들이 나중에 현장에 나왔을 때 다른 업무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겪는 괴리가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습때 배우는 업무와 현장의 업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고지시켜 주시거나, 기관에 그냥 전체적으로 맡겨버리는 식 말고 좀더 현실적인 실무를 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습지원비 지급이 실습기관이라면 실습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하므로 어려울 것으로 보임 표준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기관이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 학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는 점이 이해는 가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들다. 자율현장실습학기제 또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참여는 가능하겠지만 실습기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걱정이 된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습지원비를 주려면 인건비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책정된 예산이 없고, 책정되어 있다하더라도 실습생이 없다면 예산이 불용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힘듭니다.
실습비용 지급되는 현장실습에서는 기관이 예산산정이 되어 있지 않아 실습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도서관에서의 현장실습 운영은 대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기 전 미리 공공도서관 현장을 경험해 보라는 동일 직종 후배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담당직원이 정해지고, 담당직원은 실습 기간동안 본인의 업무 외에 교육업무를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현장실습은 실제 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담당직원이 업무적으로 학생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부담감이 더 큼니다. 3~4주 동안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교육을 실시해주는 데 따른 인센티브 또한 없으며 봉사 개념으로 교육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현장실습 지원비를 부담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맞지 않고, 예산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을 부담하면서 현장실습을 운영해야 하는 현장실습학기제는 현재 우리 도서관 상황에서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6.1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적용제외 대상으로 법개정

결론부터 말하면, 문헌정보학과는 교육부 고시 제2021-33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에서 말하는 적용제외 대상이 아니다.

2022년 상반기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에서는 표준현장실습의 도입에 따른 문제의 시급성을 1월 11일(화)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알렸고, 도서관정책기획단은 1월 12일(수) 교육부에 관련회의를 요청하였으며, 1월 13일(목) 도서관정책기획단 담당자와 교육부 담당자가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현행 도서관법 시행령과 고시에는 실습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현 상태에서 교육부 고시에 적용제외로 명시하기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따라서 향후 도서관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시 도서관 실습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의무실습으로 명시하지 않고는 교육부 고시 제2021-33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에서 말하는 적용제외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고시 제2021-33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일부 발췌)에 따르면, 적용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제외) 별도 법령 등에서 특정 전공에 대해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실습형태의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운영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학교에서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으며, 별도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1.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선실습, 「교원자격 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사회복지사업

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현장실습 등 별도법령에 따른 의무실습 등

2.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료과정운영학교 등의 인증절차에 필요한 의무실습 교육과정 및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등에 따른 보건·의료 인력의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 등

따라서 향후 도서관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 시 도서관 실습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의무실습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하나로 논의될 수 있다. 물론 교육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기획단의 건의를 받아, 대학생 사서 실습과 관련한 현장실습 관련 문의를 많아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서 실습의 필수교과목 지정을 포함하는 관련 규정 개정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현장의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실습운영을 위하여 사서실습에 대하여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3조(적용제외)를 우선 적용하도록 안내하는 공문을 전국 대학에 내려 보냈다.

그들이 근거로 삼은 것은 사서 실습 관련 규정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서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30호)

1. 사서 자격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

2.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나. 이수학점은 30학점으로 하되, 1학점은 16시간 이상의 강의(실습을 포함한다)로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서도 여러 가지 문제와 이슈가 있다. 첫째는 사서 실습의 필수교과목 지정을 전국 문헌정보학과에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즉, 전국문헌정보학과와 의 교과목을 개정하여 현장실습교과목을 개발하고 필수로 지정해야 한다. 둘째는 이러한 현장실습 학생을 받아들일 기관을 모든 대학의 문헌정보학과가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셋째는 적용제외를 받는 경우 표준현장실습생 통계에서 제외되어, 각 대학에서 현장실습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산재보험도 대학이 아니라 학과에서 지급해야 한다. 학과의 실습비의 대부분을 학생의 산재보험 및 현장실습비로 지원하는 것은 학과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표준현장실습을 따르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도 사실상 필요한 상황이다.

6.2 다른 실습체제 채택 고민

현장실습학기제는 크게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제2조제2호)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하고 있으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이 고시 제2장 및 제3장에 따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하며,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이 고시 제2장 및 제4장에 따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차이 중의 하나는 실습지원비에 있으며,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경우의 실습지원비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제22조의 실습지원비 기준을 적용하되,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운

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첫째, 학교에서는 전공 교과체계에 따른 관련 실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실습기관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교육 환경 및 여건을 갖추어야 하고, 둘째, 학교에서는 관련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은 해당 과정을 수강 및 등록하여 수업의 하나로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일련의 과정은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 등 학생의 교육목적 및 학사 일정에 따른 학업 성취도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운영 전 구체적인 학습사항 및 일정이 확정되고 이를 학생이 충분히 확인 후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일련의 과정 및 학생이 수행하는 사항은 학생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며, 학생의 활동(과정 및 결과물 포함)으로 해당 실습기관에 실질적이거나, 즉각적인 유익이 없어야 한다. 다섯째, 일련의 과정 및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을 소속 근로자의 대체 인력 또는 추가 인력으로 활용하거나, 학생에게 실습기관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을 포함한 일상 업무 수행을 시켜서는 안 된다. 여섯째, 실습기간 동안 학생은 실습기관의 현장교육담당자의 지속된 지도 아래 관찰 및 간접 체험 등 직무 체험(Job Shadowing) 형태를 주된 과정으로 하여 참여하여야 하고, 제한적으로 관련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적인 업무의 체험은 학생의 학습적 유익에 한정되어 일회성 체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없다. 일곱째,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실습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 조건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실습기관, 학교 및 학생 상호간에 사전 동의되어야 한다. 여덟째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운영되어

야 하며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여덟 개의 조건의 모두 충족시켜야 자율 현장실습으로서 운영될 수 있다. 그러면서도 2장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현장실습기관의 수용의사는 낫다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율현장실습학기제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도 전략적인 접근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실무능력이 요구되는 도서관 사서를 양성하는 문헌정보학과가 현장실습 없이 이론적으로 운영했을 때 신입직원의 즉각적인 업무 수행시의 애로 사항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동기부여, 다양한 관중에 대한 적성 확인, 이탈률과 취업률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표준현장실습학기제가 이상적이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로서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가 그나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각 대학의 상황은 매우 다를 수 있다. 표준현장실습 학기제는 물론이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도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사서 실습 운영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현장의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

6.3 현장실습기관의 충분한 확보 및 공유

한국도서관협회의 사서배출통계에 의하면, 4년제와 2년제 사서자격증 이수자의 수는 연간 2,000여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매년 2,000여명의 학생이 현장실습을 가야 한다는 것이고, 학 기관에서 평균 2명의 현장실

습생을 받는다면, 거의 1,000여개의 기관을 현장실습기관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각 대학의 현장실습과목의 현황을 보면 (노영희, 2020), 현장실습, 인턴쉽, 문헌정보실습 등 현장을 기반으로 한 실습과목이 개설된 대학은 약 80%, 그 중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대학은 전체의 약 30%에 해당한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현재 현장실습을 내보내고 있는 대학들의 현장실습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요구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학생들이 접근처에서 현장실습을 하거나 원하는 분야의 기관을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현장실습가능기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아마 해당 대학에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장을 대표하는 도서관협회 등에서 현장실습이 가능한 현장실습기관을 발굴하고 협약을 맺음으로써 학생과 학과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표준현장실습이든 자율현장실습이든 실습생을 받겠다는 실습기관의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협력적으로 현장실습기관에 대한 확보와 공동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4 현장실습매뉴얼의 개발과 공동활용

교육부의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1-33호)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너무나 많은 원칙과 조건 등이 있어서 학생편, 교수자편, 대학편, 현장실습기관편에서 각각 확인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각종 표준 서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실습기관

기본정보, 직무기술서, 협약서, 평가표, 출석부 등이 샘플로 제시되고 있으며 되도록이면 이 서식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걸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는다. <표 22>에서 보면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시시 교수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으며, 교육부에서 제시한 서식 이외에도 개발해야 할 서식이 너무나 많다. 먼저, 교수자는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등록절차 및 이수과정을 안내하고,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 지정 및 운영(직무수행 및 지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대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출결 및 평가 관리 등 학점 부여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주 또는 월 단위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간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과 관련된 전공(학과) 또는 계열 특성의 관련성 및 적합성 등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며, 만족도, 건의사항 및 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 청취하여 현장실습학기제의 선순환 운영이 되도록 수요도 및 만족도 조사지도 만들어야 한다. 채택실습의 기준과 채택실습 관리 기준도 만들어야 한다.

이는 교수자가 확인하고 개발해야 할 사항의 전부도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인과 점검은 대학의 현장실습센터, 학생, 현장실습기관에서 각각 해야 할 확인리스트가 별도로 있다. 그렇다면 이걸 개개 대학이나 교수자 및 학생이 개별적으로 하게 할 것이 아니라 표준화된 매뉴얼을 개발해서 국가해서 배포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할 수 있다. 또는 한국도서관협회나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차원에서 개발해서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 22〉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행시 교수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구분	확인
수업 요건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개설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등록절차 및 이수과정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 지정 및 운영(직무수행 및 지도) 계획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대한 점검 계획	
	출결 및 평가 관리 등 학점 부여 근거와 기준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학점부여	현장실습학기제는 제4항(수업요건)에 따라 학생의 수강신청 등이 완료된 이후 실시되어야 하며,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시된 해당 학기의 학점으로 주어야 한다.	
운영 기간 및 시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에 따른 학교별 학칙으로 정한 학기별 수업일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 또는 월 단위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간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를 기반으로 1주간 5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또는 6일인 경우에 한하여 1주간 4일 또는 6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미만이거나, 학교에서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와 다르게 운영하고자 할 경우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학교장의 의무 등	각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할 경우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각 학교의 장은 현장실습학기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및 운영 사항의 점검, 실습기관과의 협력관계 및 업무 협의 등 현장실습학기제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센터 조직구성 및 전담인력 배치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책임을 다한다. 각 학교의 장은 제29조의 정보공시 운영 현황 및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 시 거짓 또는 이 고시에 위배되는 부적격 사항이 제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운영계획서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실습기관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을 사전 공지하여 운영한다.	
적합성 검토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 여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과 관련된 전공(학과) 또는 계열 특성의 관련성 및 적합성 등	
협약	학교는 현장실습학기제를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일까지 학교, 학생, 실습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실습기관 및 학교는 제1항에 따른 협약 및 확정된 운영계획서에 근거하여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한다. 실습기관, 학교 및 학생의 사정에 따라 협약 변경 및 해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출석관리	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공휴일, 제18조에 따른 휴일 및 실습기관의 사정 등에 의한 현장실습학기제 미실시 일정을 확인하여, 실제 학생이 출석하여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시된 일자가 관리될 수 있도록 출석관리를 한다.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제 계획된 일정으로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는지 주기적으로 실습기관의 출석관리 사항을 점검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출석일로 출석을 관리하되,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에 대한 학교별 출석인정 기준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휴일 등을 학점인정에 필요한 출석일 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1주 기준 1일의 휴일은 제외한다.	
	제16조 제4항 적용 시 제27조의 재택실습은 실습기간(또는 일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정보공시 제출 시에는 학교별 학점인정에 필요한 출석일과 달리 실제 출석일을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	학교에서는 실습기관의 제출사항에 대한 이상여부에 대한 검토 후 실습기관과의 해당 현장실습학기제를 마친다.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시점에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만족도, 건의사항 및 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 청취하여 현장실습학기제의 선순환 운영이 되도록 한다.	

	구분	확인
학생보호	<p>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중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p> <p>제1항과 함께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중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p> <p>1일 기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기준 1일 이상의 휴일,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과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p> <p>1주 기준 1일의 휴일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은 유급휴일(공휴일 포함)로 한다.</p> <p>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학교에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하며, 해당 학교는 신속히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등을 요청하거나, 현장실습학기제 중단 및 학생 복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습기관에서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인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주거나 지시·강요하는 경우 2. 실습시간 및 기간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기준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 4. 산업 안전·보건과 위생, 성희롱 및 재해 상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조건의 임의 변경,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 	
학교별 규정	<p>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이 고시에 근거하여 학칙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p> <p>학교는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수행 사항을 교원업적평가 등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실습기관 발굴 및 현장점검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할 수 있다.</p>	
자료구비 (학기별 보관 및 관리)	<p>실습기관 발굴, 모집 등과 관련한 공문 및 공고문 등의 공적문서</p> <p>실습기관 및 학생별 운영계획 및 협약, 출석 및 평가 관련 서식</p> <p>참여 학생이 작성한 보고서 등 학점인정 관련 각종 서류</p> <p>제18조제2항·제3항에 따른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가입 및 학교의 상해보험 가입 증명서류 등</p> <p>현장실습학기제 운영 학년도, 학기, 국내 및 국외(국가명) 구분</p> <p>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한 소속 정보(단과대학, 전공), 학번, 이름, 학년</p> <p>실습기관 정보 및 실습지원비 수령 현황</p> <p>현장실습학기제 관련 산재 및 상해보험 가입 사항</p> <p>현장실습학기제 시작일, 종료일 및 실제 출석일수</p> <p>수강신청 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및 학점 수 등</p> <p>그 밖에 학교에서 지원한 사항 등</p>	
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	<p>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국가재난 발생 시 재난 상황에 따라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일시 중단 또는 복교, 휴학 등 학생 안전 및 보호에 우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일시 중단인 경우 현장실습학기제의 지속 운영 및 학점 취득 요건을 갖추는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p> <p>복교에 따른 중단 시 학교별 규정에 따른 학점 취득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점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체실습 교과 등의 수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거나, 학생이 희망할 경우 휴학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재택실습	<p>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학기제 지속 운영 필요에 대한 실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실습기간(또는 일수)의 100분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또는 일수) 범위에서 재택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p> <p>재택실습 기간은 현장실습학기제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p> <p>재택실습 실시 시 학교에서는 실습기관의 재택실습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실습기관의 요청서류를 갖추고,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하여야 한다.</p>	
대체실습 교과목 운영	<p>재난 상황에 따라 학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영상 또는 콘텐츠 활용 교육, 교내실습 등으로 바꿔 운영하고자 할 경우 집중수업 형태의 별도 대체실습 교과목 수강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p> <p>다만, 이 경우 학교에서는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현장실습학기제 중단 및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수강취소 등의 조치 후 운영하여야 한다.</p> <p>대체실습을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의 운영기간 및 학점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p>	

7. 결론 및 제언

한국문헌정보학 교과과정(노영희, 2020)에 따르면, K대학은 2004년부터 현장실습과목을 거의 20년 동안 필수과목으로 운영해 왔으며, 수많은 어려움과 변화를 겪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 경험이 학생들에게 주는 효과는 매우 높고 다양하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해 왔다. 일단 학과의 취업률이 40%포인트 상승했고 학생들은 학습동기 향상,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 이탈률 감소 등 다양한 효과를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를 포함하여 사서자격증자의 질 관리를 위해 제안된 방안 중의 하나로 도서관법에 사서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고자 하였으나 아직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부에서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을 전부 개정하였으며(교육부 공고 제 2021-103호), 주요 내용은 표준현장실습학기제의 도입과 운영을 규정하고, 질적 내실화 및 학생 권익과 안정성을 강화한 학생 중심의 현장실습으로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대학이나 현장실습기관이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물론 현장실습의 체계화, 학생에 대한 안정망 구축 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도서관계와 문헌정보학계는 어떤 상황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현장실습기관들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가능성과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첫째,

현장실습학생을 받는 실습기관은 지속적으로 학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장실습학기제의 목적과 범위에 맞는 업무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실습기관의 직무관련 교육시간의 배정시간을 포함하여 운영시간 및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표준현장실습의 도입상황에 대해서 매우 낮은 인지도를 보여 주었고, 표준현장실습의 내용, 표준현장실습 운영서 및 협약 내용, 표준현장실습 내용 변경 사실, 표준현장실습 수행시 실습 지원비, 표준현장실습 근로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실습기관의 요건 충족도 등에서 매우 낮은 인식도를 보여 주었으며, 다만 표준현장실습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표준현장실습과는 차이를 보이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수요도 조사에서도 낮은 수요도를 보여 주었고, 실습생의 수용의사나 수용가능 학생수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문헌정보학과 현장실습 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물론 본 연구는 한 대학이 지난 20년 동안 실습생을 보낸 기관들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응답기관이 적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할 만한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포함한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표준현장실습 도입시 고려 사항을 네 가지로 제안했다. 첫째, 문헌정보학과는 교육부 고시 제2021-33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서 말하는 적용제외 대상이 아

니기 때문에 도서관법에 현장실습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적용예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적용할 수 없다면 현재로서는 자율 현장실습 학기제라도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현장실습기관에 대한 충분한 확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전국 문헌정보학과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교육부의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1-33호)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너무나 많은 원칙과 조

건 등이 있어서 학생편, 교수자편, 대학편, 현장실습기관편에서 각각 확인해야 할 점이 많기 때문에 대학이나 교수자 및 학생이 개별적으로 하게 할 것이 아니라 표준화된 매뉴얼을 개발해서 국가에서 배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내용이 절대로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표준현장실습에 대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고, 향후 연구에서 발전적 아이디어를 내는 기초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곽동철 (2011). 문헌정보학 교육의 본질과 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2), 69-83.

구분영 (1983). 도서관학 교과과정에 있어서 사서실습교육. 서울여자대학논문집, 12, 219-241.

구분영 (1983). 한국에 있어서 사서실습교육의 실태조사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0(2), 3-37.

구정화. (2018). 예비사서들의 도서관실습 교육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 방법을 적용하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4), 269-296.

권선영, 구정화 (2018). 예비사서들의 도서관실습 지원을 위한 '사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프로그램 모의실행에 대한 요구조사 및 만족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1), 253-275.

노동조 (2009). 한국의 문헌정보학 교육을 위한 표준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4), 451-468.

노영희 (2015).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특징적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4), 79-107.

노영희 (2020). 한국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서울: 조은글터.

노영희, 곽우정 (2020). 국내 문헌정보학과 대학원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4), 123-146.

노영희, 안인자, 최상기 (2011). 한국 문헌정보학 교과목의 실용성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4), 5-29.

- 노영희, 안인자, 최상기 (2012). 한국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운영모형 및 표준교과목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2), 55-82.
- 선우석 (2018.12.4). 특성화고 현장 실습 폐지...취업률도 크게 하락. SBS News,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693782>.
- 이수영, 김유승 (2012). 문헌정보학 분야 공공도서관 실습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4), 147-168.
- 장우권 (2016). 사서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정기환, 양정미, 최종률 (2011). 관광계열 학생들의 현장실습 만족이 취업결정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 사진지리학회지, 21(4), 187-203.
- 정종기 (2011). 예비사서의 도서관실습을 위한 저널피드백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사례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2), 277-297.
- 조아라 (2018). 대학 산학협력 현장실습 품질이 학생 만족도 및 취업의지, 대학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 차성중 (2015).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의 현장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학제별 비교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2), 355-379.
- 차성중 (2017). 문헌정보학 전공 현장실습에 대한 실습지도자의 인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 문헌정보학회지, 51(2), 133-156.
- 한국도서관협회 편 (2010).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홍현진, 노영희, 김동석 (2021).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대한 현황조사 및 인식조사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1), 5-36.
- Noh, Younghee (2022). A study on the proposal of improvement plan based on the field practice status survey of the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 Technology, 12(2), 1-21.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 Sung-Jong (2015). Comparison of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of the field practice program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between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2), 355-379.
- Cha, Sung-Jong (2017). A study of practical instructors' recognition on the field practice program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1(2), 133-156.

- Chang, Woo-Kown (2016).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the strengthening of professional professionalism of librarians. The Korean Literature and Information Society's presentation on academic research.
- Hong, Hyun-Jin, Noh, Younghee, & Kim, Dongseok (2021). A study on status and necessity of the curriculum for the department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5(1), 5-36.
- Jeong, Ki Hwan, Yang, Jung Mi, & Choi, Jong Lyul (2011). A study on influence of tourism department students' field training satisfaction.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Photo-Geographers*, 21(4), 187-203.
- Jo, Ah-ra (2018). The Effect of the Service Quality of the Field Training Internships on Student Satisfaction, Will for Employment and University Loyalty.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 Jung, Jongkee (2011). A case study on the development & application of journal feedback program in pre-librarians' library field experie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2), 277-297.
- Koo, Bon-Young (1983). A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s of library practice education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0(2), 3-37.
- Koo, Bon-Young (1983). P.O. training in library science curriculum. *Seoul Women's University Paper Collection*, 12, 219-241.
- Koo, Joung Hwa (2018). A qualitative study on prospective librarians' library practicum experiences: applying Giorgi's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9(4), 269-296.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0). *Dictionary of Literature and Information Terms*.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wack, Dong Chul (2011). A study on the essence and direction of th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2), 69-83.
- Kwon, Sun Young & Koo, Joung Hwa (2018). Developing a 'pre-training program' to support pre-librarians' library practicum: pre-librarians' needs and satisfaction assessment before and after running a mock pre-training program.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9(1), 253-275.
- Lee, Su-Young & Kim, You-Seung (2012). A study on library and information school's practical training program: focused on a case of s public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4), 147-168.

- Noh, Dong-Jo (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standard curriculum for educat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4), 451-468.
- Noh, Younghee & Kwak, Woojung (2020). A study on the graduate school curriculum of the department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4(4), 123-146.
- Noh, Younghee (2015).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changing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4), 79-107.
- Noh, Younghee (2020). *Korean Literature and Information School Course*. Seoul: Jo eun Glitter.
- Noh, Younghee, Ahn, Inja, & Choi, SangKi (2011). A study on evaluating the practicalness of library and information cours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4), 5-29.
- Noh, Younghee, Ahn, Inja, & Choi, SangKi (2012). A study of the curriculum operating model and standard courses for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2), 55-82.
- Sun, Woo Seok (2019). Abolish Specialized High School Field Practice...Employment Rates Also Drop Significantly. SBS News. Available: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693782>

